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관용) 보험계약
제안요청서

2023. 3

국 토 교 통 부

물류산업과

▣ 목 차 ▣

Ⅰ. 과업개요 ····· 1

Ⅱ. 제안 요청 내용 ····· 1

Ⅲ. 참가자격 및 사업자선정 ····· 3

Ⅳ. 과업지시서 ····· 5

Ⅰ. 과업 개요

□ **공고명** :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관용) 보험계약

□ **납품기한** : 계약일부터 5일

□ **보험기간** : 2023. 3. 20. 24:00 ~ 2024. 3. 20. 24:00

□ **가입대상** : 17대

□ **구매목적**

○ 화물운송 종사자 집단운송거부 등 국가 물류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부대에서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위탁 중인 국토부 소유 차량(17대) 보험(갱신) 계약 필요

□ **계약방법**: 조달 계약

□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Ⅱ. 제안 요청 내용

○ 보험 보장내용 및 범위

보험종목	보험가입한도액	비고
대인배상Ⅰ(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3조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Ⅱ(임의)	1인당 책임보험보상 초과금액 무한보상	
대물배상(임의)	1사고당 2억원	
자동차상해	1인당 사망·후유장애 1억원, 부상 3천만원(1사고당 무한)	
자기차량손해	손해액20%(자기부담금 최저 20만원~최고 50만원 적용)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인당 2억원	
운전자연령	관련자료에 기재된 한정운전 특별약관 적용	
물적 할증기준	200만원	
운전자 정보	전연령 / 누구나	

Ⅲ.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 자격(①,②,③ 모두를 갖춘 자)

①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손해보험업 허가를(자동차보험) 받은자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자동차보험, 업종코드 : 3828)을 참가 등록을 한자

② 보험업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허가를 받은 국내 손해보험 본사로서 기준 보험지급여력비율 100%이상인 업체

③ 최근 1년이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결과 문책경고기관은 제외하며, 감독관청으로부터 최근 1년이내 경영개선 권고, 요구 및 명령을 받지 않은 업체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 등 감독관청으로부터 승인된 경영개선 통과안을 제출하여야 함

나. 기타사항

①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입찰 참가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함

②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1항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시 제출된 입찰서에 한하여 무효 처리

④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⑤ 다이렉트 보험사 입찰 제한

- (사유)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는 5개지역(부산, 광주광역시, 수원, 포천, 부평)의 군부대에 배치되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시 군간부 운전자가 비상수송대책 차량으로 긴급물류를 수송하며 화물연대 조합원운송방해로 인한 차량 파손, 운전자 부상 등에 따른 차량 및 운전자 보험처리, 구상금 청구 등을 보험사 직원이 대행하여야 함에 따라 다이렉트 보험사는 입찰을 제한 함.

2. 사업자 선정

가.「(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근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별도의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3.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토교통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가.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라.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조달계약 전에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통장사본 등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에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과업지시서

가. 낙찰보험사는 감독관청 인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험계약은 계약일로부터 효력을 진행하되 긴급한 사유로 계약업무가 지연될 때에는 계약의사 통보로 효력을 진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없다.

다. 보험료 납부는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라. 계약기간 중에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성실하게 관리하고 차기 계약사가 변경 선정될 경우에는 갱신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한다.

마. 보험계약기간 중 차량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별로 부가사항을 기재하여 변동되는 보험료를 납부 또는 환불하고 차량별로 변경 계약할 수 있다.

바. 차량 증차 등에 의하여 구입되는 신규차량은 본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 신규계약 또는 차량 교체 등으로 차량번호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차대번호로 계약 후 차량등록 완료 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 확정한다.

아. 대·폐차 차량에 대하여는 요율승계(차량 자동승계)로 가입하고, 보험가입자의 다른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가입차량의 요율승계는 하지 않는다.

자. 보험가입자의 사정에 의하여 보험계약기간의 만료 시 만료일 15일 전에 재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차. 차량교체 등으로 기존의 차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존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이때(보험해지의 경우) 기존 보험계약사는 기존차량의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카. 보험사에서 정한 약관과 본 계약서와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한다.

타.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보험사에서 정한 약관을 적용한다.

파. 차량별로 각각 보험증서(영수증)를 발행한다.